

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표

시 설 물 명				관리번호	
시설물 소재지	도로명	성북구 로		신 축 년 월일	
	지 번	성북구 동 가 번지			
납 부 의 무 자					
성명(법인명)	주민(법인)등록번호		주 소		전 화 번 호 (핸드폰)
조 사 내 용					
구분 연번	층/호	실제 사용용도 (구체적 업종)	상 호	면 적(m ²)	비 고
연 면 적 합계(건축물관리대장 연면적과 동일)					

조사일 : 2015. 7. .
 조사원 : (인)
 확인자 : 교통행정과 (인)

2015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 분 부과 및 시설물 조사 안내

1. 우리 구 교통행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(사)께 감사를 드립니다.

2. 매년 10월 부과 · 징수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의거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주에게 부과되고 있습니다.

가. 부 과 대 상 :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1,000㎡이상인 시설물

※ 연면적이 1,000㎡이상인 집합건물의 경우, 소유주의 소유 합계면적으로 부과됨.

나. 부 과 기 간 : 2015. 8. 1 ~ 2015. 7. 31

다. 부과 기준일 : 매년 7. 31일 소유자

라. 부담금 산정방법 : 각층 바닥면적의 합(㎡) × 단위부담금(원) × 교통유발계수

마. 납 부 기 간 : 2015. 10. 16 ~ 10. 31

3. 시설물 조사 : 2015. 7 ~ 8월

본 조사는 귀하(사)가 소유하신 시설물의 각 층 호수별 사용용도를 확인하여 교통유발 부담금을 정확히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요원 방문 시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

○ 방문일시 : 2015. 7월(필요시 8월에도 방문가능)

○ 조사내용

· 각층, 호수별 실제사용 용도 및 상호(상호가 있는 경우)

· 소유주 현황

· 공실 된 부분이 있는 경우 기간과 면적

· 전화번호 등

※ 30일 이상 미사용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소정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시어 9월 12일까지 교통행정과로 제출해 주시면 감면된 고지서를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※ 문의 : 성북구청 교통행정과 (☎ 2241-3402, FAX 2241-6557)

※ 건물소유주나 건물관리인 등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